

한국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과
일본 홋카이도대학대학원 수산과학원·수산학부 간 학생교류에 관한 각서

한국 국립부경대학교의 수산과학대학과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대학원 수산과학원·수산학부는
2010년10월25일에 체결한 양 기관 간 학술교류협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교류를 실시한다.

1. 파견하는 학생의 선발은 매년 먼저 파견대학에서 선발하고 최종선발은 수용대학에서 선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신청은 각 학부가 정한 지원기간까지로 한다.
2. 매년 5명 이내의 학생을 상대대학에 파견할 수 있다. 단, 매년 양 대학의 협의에 따라 초과 파견할 수 있다.
3. 학생의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4. 홋카이도대학대학원 수산과학원·수산학부의 학생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의 관련 대학원 또는 학부(과)에 수용가능하고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에서의 신분은 '교환유학생'으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생은 홋카이도대학대학원 수산과학원·수산학부에 수용가능하고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수산과학원 또는 수산학부에서의 신분은 '특별연구학생' 또는 '특별청강학생'으로 한다.
5. 학생의 전공분야는 수용대학이 적절한 지도교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수업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한다.
6. 학생은 참가하는 코스 등에 맞추어 수용대학이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7.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학위취득 자격을 가지며, 수용대학에서는 학위취득 자격을 가질 수 없다.
8. 학생은 수용대학의 수업과목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용대학은 이수상 제한이 있는 과목에 대하여 교환학생에게 수용을 허가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9. 양 대학은 해당학생의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및 학업성적에 관한 적절한 평가를 제공한다. 또한 파견 대학은 해당학생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10. 수용대학은 해당학생 학부생으로부터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1. 항공비, 체재비 등은 해당학생 또는 그 후원자가 부담하지만, 타 기관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12. 수용대학은 해당학생이 학내 또는 그 근교에 적당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학생은 수용대학이 요구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비용 및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에 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을 가진다.
14. 학생이 수용대학에 체재하는 동안 양 대학은 협력하여 해당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5. 이 각서는 조인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 시기는 본 학술교류협정과 동일하다. 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
16. 양 대학은 각서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이 각서에 의거해 수용된 교환유학생의 재적기간 동안은 상기에 정한 지원을 제공한다.

2011년 12월 26일

이 춘 우

국립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이 춘 우

2011년 12월 26일

嵯峨直恒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수산과학원장·수산대학장
사가 나오츠네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と釜慶大学校水産科学大学との間
における学生交流に関する覚書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と釜慶大学校水産科学大学との間における学生交流は、
2010年10月25日に締結された北海道大学と釜慶大学校の学術交流協定に基づき、次のとおり実施する。

1. 派遣する学生の選考は、その都度先ず派遣部局が行い、その最終選考は受入れ部局が行い、入学許可する。申請は、各部局の定める出願期限まで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毎年、5名以内の学生を相手側の部局に派遣できるものとする。ただし、各年における両部局の協議により、これを超えて派遣することができる。
3. 学生の在学期間は、原則として、1年以内とする。
4.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又は水産学部の学生は釜慶大学校水産科学大学の関連する大学院又は学部のいずれかに受入れるものとし、釜慶大学校水産科学大学における受入身分は「交換留学生」である。釜慶大学校水産科学大学の学生は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又は水産学部のいずれかに受入れるものとし、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又は水産学部における受入身分は「特別研究学生」又は「特別聴講学生」とする。
5. 学生の専攻分野は、受入れ部局が的確な指導教員を配置でき、かつ、適切な授業科目を提供できる分野とする。
6. 学生は、参加するコース等に応じ、受入れ部局が要求する語学力を有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7. 学生は、引き続き派遣部局での学位取得資格を有し、受入れ部局での学位取得資格を有しない。
8. 学生は、受入れ大学における授業科目の履修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受入れ大学は、履修上の制限がある科目について、交流学生の受講を許可しない権利を有する。
9. 両部局は、当該学生の履修を証明する文書及び学業成績に関する適切な評価を提供する。また、派遣部局は、当該学生に対してその評価に基づき単位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10. 受入れ部局は、当該学生から検定料、入学金及び授業料を徴収しないものとする。
11. 渡航費、滞在費等は、当該学生又はその後援者の負担とするが、他機関への奨学金申請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12. 受入れ部局は、当該学生が部局内又はその近郊に適当な住居を確保でき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13. 学生は、受入れ部局が求める健康保険に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健康保険の加入費用及びこれらの保険の対象とならない医療費については、学生が自己の責任において負担する。
14. 学生が受入れ部局に滞在している間、双方の部局は協力して当該学生の安全の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15. この覚書は、調印の日から効力を生じ、その見直し時期は本協定と同一とする。ただし、修正の必要がある場合は双方の合意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16. 両部局は、覚書が失効した場合でも、この覚書に基づき受け入れた交換留学生在が在籍している間は、上記に定める支援を提供する。

2011年12月26日

嵯峨直恆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長・水産学部長
嵯峨 直恆

2011年12月26日

李春雨

釜慶大学校水産科学大学長
李 春雨